



# 경기도체육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알림

1.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278(2020.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제36차 이사회(2020.7.29.)의결에 따라 「경기인등록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개정사유

-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선거인단 자격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혼선 방지

### 나. 개정내용

**부 칙(2020. 7. 29.)**

**(등록유효 기간 예외)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인후보자 추천시까지 경기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회장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인단 자격이 있다.**

※ 시행일 : 2020. 7. 29.

붙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20200729). 끝.

## 경기도체육회장

수신자 수원시체육회장, 고양시체육회장, 용인시체육회장, 남양주시체육회장, 화성시체육회장, 안양시체육회장, 파주시체육회장, 시흥시체육회장, 광명시체육회장, 김포시체육회장, 광주시체육회장, 군포시체육회장, 오산시체육회장, 이천시체육회장, 양주시체육회장, 구리시체육회장, 안성시체육회장, 의왕시체육회장, 포천시체육회장, 하남시체육회장, 여주시체육회장, 양평군체육회장, 동두천시체육회장, 가평군체육회장, 연천군체육회장, 성남시체육회장, 부천시체육회장, 의정부시체육회장, 평택시체육회장, 과천시체육회장, 안산시체육회장, 1-64 경기도종목단체장

주임 정원희 부장 이상현 전결 07/31

협조자 차장 권경아

시행 종목지역파트-2349 (2020.07.31) 접수 ()  
우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전화 031-250-0463 전송 / 3773@ggsc.or.kr / 공개